

## 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1항(주민등록증의발급등)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1항(주민등록증의발급)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, 거주불명으로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되어 통지문을 전달 할 수 없어 제36조1항(주민등록증의발급절차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— 다 음 —

- 공 고 일 : 2017.12.01~ 2017.12.15(15일간)
- 공 고 사 유 : 만17세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
- 공고대상자 : 속초시 선사로1길 16, 이\*\* (세대주:이\*\*)
- 증발급기간 : 2017.12.01~ 2018.11.30.
- 공 고 장 소 :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
\*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제40조」)

2017년 11월 30일

조 양 동 장 인

